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84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추경호 · 서일준 · 임종득
박덕흠 · 배준영 · 김선교
주진우 · 김상훈 · 김기현
김위상 · 권성동 · 권영진
박충권 · 윤한홍 · 서지영
김성원 · 인요한 · 정희용
조은희 · 최은석 · 나경원
김장겸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과 사적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보험 체계로,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외 영역을 보장하여 개인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률은 답보 상태에 머무는 반면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확대가 국민건강

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등 양 제도의 조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청권 신설 등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0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협의·조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및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각각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2.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대상·범위 등의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등에 대하여 상호간 미치는 영향

3.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와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비급여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현황
 4. 제3호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국민의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재정 및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5. 실손의료보험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요양급여비용 등 지급금 현황
 6. 그 밖에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3.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알리거나 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3조의2(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협의·조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및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u> <u>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u> <u>1.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u>

각각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2.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대상·범위 등의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등에 대하여 상호간 미치는 영향

3.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와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비급여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현황

4. 제3호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국민의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재정 및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5. 실손의료보험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요양급여비용 등 지급금 현황

6. 그 밖에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
요율 산출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

3.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알리거나 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